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6. 11 선고 2024가단526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6. 1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199,909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4. 2. 21.부터 2024. 4. 5.까지는 연 5%의, 2024.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2023. 11. 2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2023. 11. 29. 접수 제55954호로 마친 A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신교식
별지